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공청회 결과 안내

제도연구실 출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오후 2시) 경기도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건축사사무소 및 전문건설업체 등 관련업 종사자 수백명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완화 개선, 건축설계·건설업간 겸업여건 조성 및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건설

등 관련업계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와 관련된 건설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며, 대형업체 봐주기”라며 단호하게 맞섰다.

가까스로 무산위기를 넘기며 진행된 공청회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합리화방안에 대한 성토 분위기 그 자체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건설산업혁신 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물이다.

공청회 자료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토론 과제

2005. 10. 18

본 자료는 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논의 과제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목 차

- 1. 추진경과 ----- 1
- 2. 규제합리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2
 - 2.1 필요성 ----- 2
 - 2.2 기본방향 ----- 4
- 3. 개선방안 ----- 5
 - 3.1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 5
 - 3.2 하도급제도 개선 ----- 8
 - 3.3 입찰제도 개선 ----- 10
 - 3.4 보증제도 개선 ----- 14
 - 3.5 감리제도 개선 ----- 16
 - 3.6 기 타 ----- 19

1. 추진 경과

- '05.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산업 규제개선」과제는 심도 있게 추가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기로 결정
 - 업역분야, 입찰·보증분야, 감리·안전분야에 대해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
 -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05.10)에 보고
-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금년 9월까지 재경부와 건교부는 관련부처,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정부계약제도 개선 T/F (재경부 추진)
 -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운영
 - 입찰·보증·감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 ※ '05. 8월까지 T/F전체회의 3차, 실무추진반 회의 13차 개최
 - 건설업역·하도급 개선 T/F (건교부 추진)
 -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운영
 - 업역·하도급·안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 '05. 8월까지 T/F전체회의 및 실무추진반 회의 11차 개최
 - 전기 및 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
 - ※ 건교·산자·정통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 총 5회 개최

2.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1. 규제합리화의 필요성

-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
 - '04년 건설투자는 117.7조원으로 GDP의 18% 수준
 -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건설분야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8.2%인 182만명

※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20.8명/10억원, 제조업 14.4명/10억원

-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5만 여개의 건설업체가 활동 중
 - 일반건설업체수는 '97년 3,896개사에서 '03년 12,996개사, 전문건설업체수는 23,925개사에서 37,120개사로 증가
- 이와 같은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업역구조와 운(運)에 의해 좌우되는 입찰제도 등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해외시장 규모가 매년 5%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물량은 오히려 감소 ('97년 140억불 → '04년 75억불)
 - ※ 해외시장 점유율은 해외건설시장의 2~3% (세계 11~12위권)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업역 및 입찰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 '05.1)
 - 일반·전문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건설업의 건축설계업 겸업 제한 등 지나친 업역보호 정책으로 생산체계 유연성 부족
 - ※ 일반·전문업체간의 진입장벽은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 저해
 - 현행 입찰제도의 운찰제(運札制)적 성격*과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미흡
 - ※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낙찰제에서의 저가심의제가 요행에 의해 낙찰자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질
 - ※ 타 입찰자의 평균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저가심의제로 인해 담합 유발

⇒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필요
 ⇒ 이에 따라 건설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

2.2. 규제합리화의 기본방향

- 목표
 - 건설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및 경쟁기반 조성
 - 수요자 중심의 건설산업 체계로의 개편
- 기본방향
 - 수직적 생산체계의 수평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업역간 경쟁과 협력을 활성화
 - 건설기술 및 수요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발주관련 규제 및 겸업제한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격과 기술경쟁력의 적절한 조화로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구축
 - 하도급 관계의 투명화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하수급인 보호방안 강구
 -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범위 명확화 및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합리화로 부실시공 방지

3. 개선방안

3.1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 기본방향 〉

- ◇ 업역간 경쟁과 협력의 활성화
- ◇ 기술·수요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

- (1)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간 겸업제한 개선
 - 일반·전문업체간 겸업 금지(7개 전문건설업종 제외), 일반·전문업체 수급범위 제한 및 전문건설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 일정규모로 성장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면허를 포기해야 하므로 일반업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며, 전환시 수주범위 제한으로 축적된 기술력 사장
- 도로·교량 등 시공물별로 특화된 건설업자로의 성장을 저해하며 업역 관련 분쟁 심화
- 위장계열사 설립·전문건설업 자격대여 등으로 겸업제한을 회피하면서 건설시장의 혼란 야기

△ 상·하수도관 교체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일반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이라고 주장하여 분쟁 발생
 △ 일반건설업체의 30% 이상(약 4,000개)이 겸업 제한을 피해 별도의 전문건설회사 운영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 ⇒ ①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 재조정
- ②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시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강구
 - 전문건설업의 일반건설업 겸업 우선 허용 및 전문공사 시공실적 인정
 -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주방식 규제 개선(CM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 ※ '99년 규개위에서 겸업제한을 '02년까지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2) 건설업·건축설계업 겸업 여건 조성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제한으로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환류되지 못하여 설계기술발전에 제약이 되며, 건설업체가 건설사업관리*으로 전환하는데 지장
 - ※ 건설사업관리업(CM, construction management) : 기획·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을 포괄한 종합관리시스템업

△ 대형 건설사는 사실상의 계열사 형태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 저하(예 : 삼성(삼우설계), LG건설(창조건축), 포스코개발(포스A&C))
 △ 토목설계의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설계 겸업 가능

⇒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 보유업체가 자기설계 공사에 대한 시공 또는 자기시공 공사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설계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CM)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개선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발주자의 공사관리능력이 적은 경우 시공연계성 저하로 인한 **공사지연, 비용증가 및 하자책임 분쟁 발생**

※ 민간공사에까지 분리발주 의무제를 규정한 외국 사례 없음

△ A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분리발주로 인한 공공간 조정 미흡으로 200세대의 조적벽을 허물고 재시공

⇒ ①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 예외 규정* 확대

※ 민간공사에 대해 실효성없이 부담만 주는 규제 개선(건설업자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겸한 경우와 건설업자 및 전기·정보통신공사업자간 공동수급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등)

※ LNG 저장탱크 공사와 같이 기술적으로 타공종과의 분리시공이 어려워 분리발주가 비효율적인 경우 등

②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주(主)공정인 경우 전기공사업자나 통신공사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발주형태 허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3.2. 하도급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 하도급 관계의 투명화 등을 통해 하수급인 보호 방안 강구
- ◇ 건설회사 정보공시 체계화로 발주자 등 수요자 보호

(1)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 합리화

○ 하도급금액이 낙찰가 대비 82%미만인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됨(04.12, 건설법 개정)

- 발주청이 심사를 기피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조리 발생 우려

※ 82% 기준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심사대상에 포함(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 낙찰가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등의 실태조사('06.3월) 실시 후 합리적인 하도급 저가심의 기준 마련

※ 하도급 금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수행능력이 없는 하도급업체를 선택했는지 또는 품질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 제4조 개정

(2) 하도급 관리체계의 투명화 및 하수급인 보호제도 개선

○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교부 기피***

※ 하도급 계약대비 지급보증서 교부실적이 10.2%(03)에 불과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② 이와 함께 **일반·전문건설업 통합방안과 연계**하여 하도급체계 개편 추진

3.3. 입찰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확립

(1) 적격심사제 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입찰가격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적격심사제 적용

- 그러나 입찰참가업체 대부분이 시공능력 점수 등은 만점이고 예정가격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제시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낙찰은 기술 능력과 관계없이 운에 좌우됨

※ 예정가격 :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비가격의 상하 2% 내에서 제시한 15개의 가격 중 입찰자들이 추천한 4개의 평균값으로 정함

- 이에 따라 업체를 많이 만들어 입찰할수록 낙찰 확률이 증대함에 따라 부실 건설업체 양산

⇒ ① 시공능력 평가시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배점 방식을 조정하며 기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비율, 사용자 품질평가 등)를 심사기준으로 추가

-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를 가감점제는 현행처럼 ±2점 폭을 유지하되 가점은 재해율에 따라 부과하며 감점은 산재은폐 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

※ PQ(pre 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환경규제위반 감점제는 현행 -1점 폭을 유지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3~4등급)하도록 개선
- 계약이행능력 분야의 핵심인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현 5등급)하고, 등급별 점수 폭을 확대

⇒ ② 가격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에의 근접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은 폐지

-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조화시켜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 도입 추진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시 계약이행능력·기술(공법) 평가 등 심사기능의 객관·공정화 및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제도 구축

(2)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 '05. 1월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유보되었으며, '04. 8월 저가심의제 강화 이후 최저가낙찰제가 운찰제

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대두

- ※ 저가심의제한 입찰서상 제시된 공종별 비용 내역이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공종수가 총 공종수의 10%이상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

△ 평균 2.8위 업체가 낙찰되다가, '04.8월 저가심의 강화이후 평균 6.6위 업체가 낙찰
 △ 순창-운암(2공구) 도로확장공사('04.9공고)는 12위업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5공구 토목공사('04.10공고)는 16위업체 낙찰

⇒ ① 단순가격심사 위주의 현행 저가심의제를 공사중단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

- 공사비 절감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공사이행 보증 강화 등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 (필요시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심의회” 구성·운영)

②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통합하여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로 개선

③ 시행이 유보('04.12)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확대(2006. 1/4분기중)

(3)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도 개선

- 철도, 항만 등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나, -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턴키입찰이 남용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대다수('03년 74.4%)를 차지하여 중견업체들의 수주기회 미미

⇒ ① 턴키입찰 대상 공사 발주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 도입

- 타당성 검토시 턴키발주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 기타 전문기관에 의한 턴키발주 여부 검토 후 시행

-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현상설계공모**”후 설계·시공 분리발주(턴키대상에서 제외)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 과도한 설계비 부담(공사비의 3~5%) 등으로 소수 대기업에 의한 **수주 독점*** 및 **가격 담합 우려**
 - ※ '01년~'04.9월간 총 142건의 공사중 상위 6개사가 73건(51.4%) 수주
 - 소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가격 경쟁 미흡으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매우 높음**('03년 94.4%)

'04년도 계약한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및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토목공사의 경우 3개 참여업체의 입찰가격이 동일

- ⇒ ② **중소·중견기업의 턴키공사 입찰 참여기회 확대**
 - 도로, 지하철, 철도 등 연속적으로 시공되는 선형공사는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구 분할 발주**
 - ☞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개정
 - 입찰시 제출도면·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질조사 및 기타 입찰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의 경우 발주기관 주도로 공동조사 할 것을 권장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설계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로비**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시비 빈발
- ⇒ ③ **설계평가의 적정성·공정성 제고**
 - 미관 등 주관적 요소가 작용되는 사항 외에는 **경제성 지표** 등 객관성 있는 지표를 **마련하며** 주관적 평가에서 일부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 **순위만을 평가**

- 각 부문별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 및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 평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비
- 주요 자재, 구조형식, 적용공법 등에 대한 **VE(Value Engineering)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이를 **경제성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경제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설계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재경부 T/F 검토 의견 : 입찰제도〉

- 본문 외 내용 -

1. 적격심사제

- ◇ 기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 비율, 사용자품질평가 등)**을 심사기준으로 새로이 추가
- ◇ **산업재해율 감점제** 등 계약이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신인도 분야를 폐지**
- ◇ 크게 약화시키는 있는 **지역가점제 축소(10%→5%)**
 - 지역중소업체의 입찰기회 축소 등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점 부여시 지역업체 지원비율 기준을 확대(20%→30%)
 -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
- ◇ 분야중 입찰업체의 경영상태만을 심사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도 심사요소에 포함**
 - ※ 현재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만을 심사
- ◇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현재 73%~83%)을 하향 조정(5%p 하향조정)**

2. 최저가낙찰제

- ◇ 발주기관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부터 저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되 **평균 입찰가격도 일부 가미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 ※ 직접공사비 : 총공사비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3.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건교부 의견)

◇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군별 제한입찰 및 설계보상비 증액**

3.4 보증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보증심사 기능강화를 통한 **덤핑입찰·부실시공 방지**

(1)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폐지
○ 보증기관은 주로 **담보설정** 등으로 보증사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있어 적절한 **계약이행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

- **낙찰금액 등을 고려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덤핑입찰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연대보증인**제는 **연쇄도산의 부작용과** 함께 보증심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 내포

⇒ ① 저가낙찰 등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별로 **보증제한 예고제** 도입

※ 보증제한예고제 : 추후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시 보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당해 회사에 경고하는 제도

☞ 보증기관(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의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여 운용

② 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 가능토록 **특례 설정**

※ 학교, 재해복구 등과 같이 완성이 시급한 공사,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③ 계약체결 후 **보증방법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연대보증인 입보 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경

우 등

(2)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

○ 건설관련 보증시장은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2개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인 일반화

※ 은행은 BIS 규제로 건설보증 기피, 손보사는 금감위 미허가로 진입 불가

※ 경쟁미흡 등으로 건설보증의 수수료 대비 이익률이 여타 보험에 비해 높음

⇒ '07년부터 보증시장이 개방되도록 **보증취급기관의 확대에 대한 로드맵** 제시

3.5 감리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으로 **부실시공 방지**

◇ 감리전문업체 육성으로 감리업무의 **전문·고도화** 유도

(1) 감리전문회사 육성 및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교량, 댐 등 22개 공종의 건설공사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책임감리 시행**

- 감리회사 선정시 당해 공사의 설계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2점)**을 부여, **설계자가 감리할 경우 설계오류의 지적이 곤란하며 타 감리업체가 입찰 참여를 기피**

⇒ ① 저가 수주공사 등 감리 강화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대가 기준을 상향 조정 검토**

②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Q) 개선**

• 발주청이 원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경우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며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③ 감리입찰시 설계 실적에 대한 **가점제도를 폐지**하되, 감리업무 중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문은 설계자가 수행하거나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수행토록 제도화

- (2) 감리자의 교체 및 평가의 명확화
 - 감리업체가 기 투입된 감리자를 교체하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여 감리 부실화 초래

⇒ ① 감리자의 교체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및 고의 교체시 계약해제

② 감리사후평가제 도입 및 사후평가내용을 감리 입찰시 활용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사후 용역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감리자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며 사후평가항목에 **사용자의 품질평가분야 추가**

- (3) 부실시공 책임 주체의 명확화
 -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입기간을 공사중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하자발생이 부실감리에 기인하는 경우 **책임 추궁 곤란**

⇒ ① 부실시공발생시 시공자와 공동책임을 지는 등 감리자의 책임내용 및 범위 등을 계약문서에 **명문화**

② 발주자가 공사성격을 감안하여 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확대**

- 책임기간을 감리자는 **감리계약(착공~완공) 기간**으로 하고, 감리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1997년) “하자보수기간(최대 10년)”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설정했으나 업체부담 및 예산 문제를 이유로 **부보기간을 축소**(1999년 개정)

③ 부실시공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 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을 작업단위로 시공자, 감리자가 서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추적이

가능토록 정보시스템 구축

④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도입 방안 검토

〈재경부 T/F 검토 의견 : 감리제도〉

- 본문 외 내용 -

1. 감리수주단계

- ◇ 설계회사가 동일 감리입찰에 참가 금지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 ◇ 설계와 감리업의 겸업제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2. 감리이행단계

- ◇ 발주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의 선정, 부실벌점 등의 권한을 **제3기관에 의뢰**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3.6 기타

- (1)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선
 - 건설업은 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수급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주간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주간 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

- (2) 건설공사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기준 완화
 -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도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의 의무배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
 -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품질관리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실정

⇒ 시험실의 **의무설치 폐지** 및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치 유무 결정

-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완화**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공청회 결과 안내

제도연구실 출처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10월 18일(오후 2시) 경기도 평촌 소재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건축사사무소 및 전문건설업체 등 관련업 종사자 수백명은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완화 개선, 건축설계·건설업간 겸업여건 조성 및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건설산업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기획단 관계자는 “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고,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건설

등 관련업계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으나, 전기·정보통신공사 업계와 관련된 건설업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며, 대형업체 봐주기”라며 단호하게 맞섰다.

가까스로 무산위기를 넘기며 진행된 공청회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마련한 합리화방안에 대한 성토 분위기 그 자체였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을 종합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방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건설산업혁신 위원회가 지난 5개월 동안 연구·검토한 결과물이다.

공청회 자료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를 위한 주요 토론 과제

2005. 10. 18

본 자료는 지난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을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 논의 과제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

목 차

1. 추진경과 -----	1
2. 규제합리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	2
2.1 필요성 -----	2
2.2 기본방향 -----	4
3. 개선방안 -----	5
3.1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	5
3.2 하도급제도 개선 -----	8
3.3 입찰제도 개선 -----	10
3.4 보증제도 개선 -----	14
3.5 감리제도 개선 -----	16
3.6 기 타 -----	19

1. 추진 경과

- '05.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건설산업 규제개선」과제는 심도 있게 추가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확정기로 결정
 - 업역분야, 입찰·보증분야, 감리·안전분야에 대해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
 - 국무조정실이 총괄·조정하여 규제개혁 장관회의('05.10)에 보고
-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금년 9월까지 재경부와 건교부는 관련부처,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
 - 정부계약제도 개선 T/F (재경부 추진)
 -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운영
 - 입찰·보증·감리제도 개선방안 검토
 - ※ '05. 8월까지 T/F전체회의 3차, 실무추진반 회의 13차 개최
 - 건설업역·하도급 개선 T/F (건교부 추진)
 - 건교부 건설선진화본부장을 팀장으로 T/F를 구성·운영
 - 업역·하도급·안전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 ※ '05. 8월까지 T/F전체회의 및 실무추진반 회의 11차 개최
 - 전기 및 통신공사 분리발주 개선과제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
 - ※ 건교·산자·정통부, 관련단체 및 전문가 참여, 실무회의 총 5회 개최

2.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2.1. 규제합리화의 필요성

- 건설산업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주택건설 등 경제성장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등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 차지
 - '04년 건설투자는 117.7조원으로 GDP의 18% 수준
 -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건설분야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8.2%인 182만명

※ 취업유발계수 : 건설업 20.8명/10억원, 제조업 14.4명/10억원

- 건설업 면허개방 이후 건설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5만 여개의 건설업체가 활동 중
 - 일반건설업체수는 '97년 3,896개사에서 '03년 12,996개사, 전문건설업체수는 23,925개사에서 37,120개사로 증가
- 이와 같은 국가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직적 업역구조와 운(運)에 의해 좌우되는 입찰제도 등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 우리나라 건설기술 수준은 선진국보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해외시장 규모가 매년 5%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주물량은 오히려 감소 ('97년 140억불 → '04년 75억불)
 - ※ 해외시장 점유율은 해외건설시장의 2~3% (세계 11~12위권)
- 건설산업의 경쟁력 저하 원인으로 국내 건설산업의 업역 및 입찰제도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건설산업 선진화기획단 '05.1)
 - 일반·전문간 겸업·영업범위 제한*, 건설업의 건축설계업 겸업 제한 등 지나친 업역보호 정책으로 생산체계 유연성 부족
 - ※ 일반·전문업체간의 진입장벽은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생산체계 구축 저해
 - 현행 입찰제도의 운찰제(運札制)적 성격*과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공정한 경쟁질서 미흡
 - ※ 적격심사제 및 최저가낙찰제에서의 저가심의제가 요행에 의해 낙찰자 결정되는 방식으로 변질
 - ※ 타 입찰자의 평균입찰가격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저가심의제로 인해 담합 유발

⇒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 필요
 ⇒ 이에 따라 건설산업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

2.2. 규제합리화의 기본방향

- 목표
 - 건설산업의 시장기능 활성화 및 경쟁기반 조성
 - 수요자 중심의 건설산업 체계로의 개편
- 기본방향
 - 수직적 생산체계의 수평적 생산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업역간 경쟁과 협력을 활성화
 - 건설기술 및 수요 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 발주관련 규제 및 겸업제한 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가격과 기술경쟁력의 적절한 조화로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구축
 - 하도급 관계의 투명화 및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여 실질적인 하수급인 보호방안 강구
 -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와 책임범위 명확화 및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합리화로 부실시공 방지

3. 개선방안

3.1 업역구조의 합리적 개편

(기본방향)

- ◇ 업역간 경쟁과 협력의 활성화
- ◇ 기술·수요변화에 따른 건설산업의 대응력 강화

- (1) 일반건설업(5종)과 전문건설업(25종)간 겸업제한 개선
 - 일반·전문업체간 겸업 금지(7개 전문건설업종 제외), 일반·전문업체 수급범위 제한 및 전문건설업종의 지나친 세분화

- 일정규모로 성장한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문면허를 포기해야 하므로 일반업자로의 전환에 장애가 되며, 전환시 수주범위 제한으로 축적된 기술력 사장
- 도로·교량 등 시공물별로 특화된 건설업자로의 성장을 저해하며 업역 관련 분쟁 심화
- 위장계열사 설립·전문건설업 자격대여 등으로 겸업제한을 회피하면서 건설시장의 혼란 야기

△ 상·하수도관 교체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체에서는 상하수도설비공사, 일반건설업체는 토목공사업이라고 주장하여 분쟁 발생
 △ 일반건설업체의 30% 이상(약4,000개)이 겸업 제한을 피해 별도의 전문건설회사 운영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 발생

- ⇒ ① 일반·전문건설업을 건설업으로 통합하고 업종 구분체계 재조정
- ② 일반·전문건설업간 겸업허용시 전문건설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강구
 - 전문건설업의 일반건설업 겸업 우선 허용 및 전문공사 시공실적 인정
 - 다양한 발주방식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주방식 규제 개선(CM발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등)
 - ※ '99년 규개위에서 겸업제한을 '02년까지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2) 건설업·건축설계업 겸업 여건 조성
 - 건설업체의 건축설계업 참여제한으로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공법이 설계과정에 환류되지 못하여 설계기술발전예 제약이 되며, 건설업체가 건설사업관리*으로 전환하는데 지장
 - ※ 건설사업관리업 (CM, construction management) : 기획·설계·입찰·시공·유지관리 등을 포괄한 종합관리시스템업

△ 대형 건설사는 사실상의 계열사 형태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규제 실효성 저하(예 : 삼성(삼우설계), LG건설(창조건축), 포스코개발(포스A&C))
 △ 토목설계의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만으로 건설업체의 엔지니어링설계 겸업 가능

⇒ 일정 수 이상의 건축사 보유업체가 자기설계 공사에 대한 시공 또는 자기시공 공사에 대한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설계업자가 건설사업관리업(CM)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검토

(3)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의무제 개선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어 발주자의 공사관리능력이 적은 경우 시공연계성 저하로 인한 **공사지연, 비용증가 및 하자책임 분쟁 발생**

※ 민간공사에까지 분리발주 의무제를 규정한 외국 사례 없음

△ A 건설회사가 시공한 아파트의 경우, 분리발주로 인한 공공간 조정 미흡으로 200세대의 조적벽을 허물고 재시공

⇒ ①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분리발주 예외 규정* 확대

※ 민간공사에 대해 실효성없이 부담만 주는 규제 개선(건설업자가 전기·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겸한 경우와 건설업자 및 전기·정보통신공사업자간 공동수급체에게 발주하는 경우 등)

※ LNG 저장탱크 공사와 같이 기술적으로 타공종과의 분리시공이 어려워 분리발주가 비효율적인 경우 등

② 전기공사나 통신공사가 주(主)공정인 경우 전기공사업자나 통신공사업자를 주계약자로 하는 발주형태 허용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

3.2. 하도급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 하도급 관계의 투명화 등을 통해 하수급인 보호 방안 강구
- ◇ 건설회사 정보공시 체계화로 발주자 등 수요자 보호

(1)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 합리화

○ 하도급금액이 낙찰가 대비 82%미만인 경우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의무화됨(04.12, 건설법 개정)

- 발주청이 심사를 기피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부조리 발생 우려

※ 82% 기준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이 심사대상에 포함(03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결과)

⇒ 낙찰가 대비 하도급금액 비율 등의 실태조사('06.3월) 실시 후 합리적인 하도급 저가심의 기준 마련

※ 하도급 금액의 직접 조정보다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해 수행능력이 없는 하도급업체를 선택했는지 또는 품질확보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사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5 제4조 개정

(2) 하도급 관리체계의 투명화 및 하수급인 보호제도 개선

○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교부 기피***

※ 하도급 계약대비 지급보증서 교부실적이 10.2%(03)에 불과

⇒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② 이와 함께 **일반·전문건설업 통합방안과 연계**하여 하도급체계 개편 추진

3.3. 입찰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 가격과 기술경쟁력을 적절히 반영하여 최적의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는 입찰제도 확립

(1) 적격심사제 개선

○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와 턴키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입찰가격과 시공능력 등을 종합

심사하는 적격심사제 적용

- 그러나 입찰참가업체 대부분이 시공능력 점수 등은 만점이고 예정가격에 근접한 입찰가격을 제시할수록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낙찰은 기술 능력과 관계없이 운에 좌우됨

※ 예정가격 : 조달청의 표준품셈에 의한 예비가격의 상하 2% 내에서 제시한 15개의 가격 중 입찰자들이 추천한 4개의 평균값으로 정함

- 이에 따라 업체를 많이 만들어 입찰할수록 낙찰 확률이 증대함에 따라 부실 건설업체 양산

⇒ ① 시공능력 평가시 시공품질이 확보되도록 배점 방식을 조정하며 기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비율, 사용자 품질평가 등)를 심사기준으로 추가

-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를 가감점제는 현행처럼 ±2점 폭을 유지하되 가점은 재해율에 따라 부과하며 감점은 산재은폐 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개선

※ PQ(pre qualification)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 PQ 신인도 심사항목 중 환경규제위반 감점제는 현행 -1점 폭을 유지하되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3~4등급)하도록 개선
- 계약이행능력 분야의 핵심인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현 5등급)하고, 등급별 점수 폭을 확대

⇒ ② 가격 경쟁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에의 근접도에 따라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은 폐지

- 품질경쟁과 가격경쟁을 조화시켜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 도입 추진
-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시 계약이행능력·기술(공법) 평가 등 심사기능의 객관·공정화 및 실질적 수행을 위한 제도 구축

(2) 최저가 낙찰제도 개선

- '05. 1월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에까지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유보되었으며, '04. 8월 저가심의제 강화 이후 최저가낙찰제가 운찰제

로 변질되었다는 비판 대두

- ※ 저가심의제한 입찰서상 제시된 공종별 비용 내역이 평균보다 10%이상 낮은 공종수가 총 공종수의 10%이상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

△ 평균 2.8위 업체가 낙찰되다가, '04.8월 저가심의 강화이후 평균 6.6위 업체가 낙찰

△ 순창-운암(2공구) 도로확장공사('04.9공고)는 12위업체,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5공구 토목공사('04.10공고)는 16위업체 낙찰

⇒ ① 단순가격심사 위주의 현행 저가심의제를 공사중단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로 개선

- 공사비 절감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거나 공사이행 보증 강화 등으로 계약이행 능력이 확인되는 경우 낙찰자로 선정 (필요시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심의회” 구성·운영)

②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통합하여 최고가치 낙찰제(Best Value)로 개선

③ 시행이 유보('04.12)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 확대(2006. 1/4분기중)

(3)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도 개선

- 철도, 항만 등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방식이나, -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턴키입찰이 남용된다는 비판이 있으며, 1천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가 대다수('03년 74.4%)를 차지하여 중견업체들의 수주기회 미미

⇒ ① 턴키입찰 대상 공사 발주 여부에 대한 검토 절차 도입

- 타당성 검토시 턴키발주 대상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 기타 전문기관에 의한 턴키발주 여부 검토 후 시행

-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미관 등 **계량화가 곤란하거나 창의성이 별도로 요구되는** 건축공사는 “**현상설계공모**”후 설계·시공 분리발주(턴키대상에서 제외)
-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 개정
- 과도한 설계비 부담(공사비의 3~5%) 등으로 소수 대기업에 의한 **수주 독점* 및 가격 담합 우려**
 - ※ '01년~'04.9월간 총 142건의 공사중 상위 6개사가 73건(51.4%) 수주
 - 소수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가격 경쟁 미흡으로 턴키공사의 **낙찰율이 매우 높음**('03년 94.4%)

'04년도 계약한 경주-감포2 국도건설공사 및 부산지하철 3호선 2단계 토목공사의 경우 3개 참여업체의 입찰가격이 동일

- ⇒ ② **중소·중견기업의 턴키공사 입찰 참여기회 확대**
 - 도로, 지하철, 철도 등 연속적으로 시공되는 선형공사는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구 분할 발주**
 - ☞ 턴키대안입찰제도 업무요령 개정
 - 입찰시 제출도면·서류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질조사 및 기타 입찰참여자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기초조사**의 경우 발주기관 주도로 공동조사 할 것을 권장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발주기관별로 이루어지는 설계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전문성 부족, 과도한 로비** 등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공정성 시비 빈발
- ⇒ ③ **설계평가의 적정성·공정성 제고**
 - 미관 등 주관적 요소가 작용되는 사항 외에는 **경제성 지표 등 객관성 있는 지표**를 마련하며 **주관적 평가**에서 일부 평가자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 **순위만을 평가**

- 각 부문별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 및 배점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적인 근거없는 평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정비
- 주요 자재, 구조형식, 적용공법 등에 대한 **VE(Value Engineering) 검토서 제출을 의무화** 하여 이를 **경제성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경제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 설계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절차 구체화
-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재경부 T/F 검토 의견 : 입찰제도〉

- 본문 외 내용 -

1. 적격심사제

- ◇ 기 수행된 공사에 대한 **사후평가요소(하자발생 비율, 사용자품질평가 등)**을 심사기준으로 새로이 추가
- ◇ **산업재해율 감점제** 등 계약이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신인도 분야를 폐지**
- ◇ 크게 약화시키는 있는 **지역가점제 축소(10%→5%)**
 - 지역중소업체의 입찰기회 축소 등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점 부여시 지역업체 지원비율 기준을 확대(20%→30%)
 - 공사에 대한 시공경험 심사기준을 다소 완화
- ◇ 분야중 입찰업체의 경영상태만을 심사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도 심사요소에 포함**
 - ※ 현재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영상태만을 심사
- ◇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낙찰하한율(현재 73%~83%)을 하향 조정(5%p 하향조정)**

2. 최저가낙찰제

- ◇ 발주기관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최저가격 입찰자** 부터 저가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의하되 **평균 입찰가격도 일부 가미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
- ※ **직접공사비** : 총공사비에서 이윤,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

◇ 발주기관의 주관적 판단의 적정성에 대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사비 절감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3. 설계·시공일괄(턴키)입찰제(건교부 의견)

◇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군별 제한입찰 및 설계보상비 증액**

3.4 보증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보증심사 기능강화를 통한 **덤핑입찰·부실시공 방지**

- (1) 보증기관의 계약이행 검증 강화 및 연대보증제 폐지
 - 보증기관은 주로 **담보설정** 등으로 보증사고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있어 적절한 **계약이행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미흡**
 - **낙찰금액 등을 고려한 보증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덤핑입찰 방지에 한계가 있으며 **연대보증인제는 연쇄도산의 부작용과 함께 보증심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문제점 내포**

- ⇒ ① 저가낙찰 등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가 증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별로 **보증제한 예고제** 도입
 - ※ 보증제한예고제 : 추후 수익률이 낮은 공사 수주시 보증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미리 당해 회사에 경고하는 제도
 - ☞ 보증기관(서울보증, 건설공제조합)의 내부규정 등에서 정하여 운용

- ② 우선 1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되,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보증인 가능토록 **특례 설정**
 - ※ 학교, 재해복구 등과 같이 완성이 시급한 공사, 연속적으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후속 공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 등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③ 계약체결 후 **보증방법을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연대보증인 입보 후 이행보증서로 대체하는 경

우 등

(2) 보증·보험 취급기관 확대

○ 건설관련 보증시장은 공제조합과 보증보험사 2개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건설업체간 연대보증인 일반화

※ 은행은 BIS 규제로 건설보증 기피, 손보사는 금감위 미허가로 진입 불가

※ 경쟁미흡 등으로 건설보증의 수수료 대비 이익률이 여타 보험에 비해 높음

⇒ '07년부터 보증시장이 개방되도록 **보증취급기관의 확대에 대한 로드맵 제시**

3.5 감리제도 개선

—〈 기본방향 〉—

◇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으로 **부실시공 방지**

◇ 감리전문업체 육성으로 감리업무의 전문·고도화 유도

- (1) 감리전문회사 육성 및 감리자 선정의 투명성 강화
 - 총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교량, 댐 등 22개 공종의 건설공사 및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에 **책임감리 시행**
 - 감리회사 선정시 당해 공사의 설계실적이 있을 경우 가점(2점)을 부여, **설계자가 감리할 경우 설계오류의 지적이 곤란하며 타 감리업체가 입찰 참여를 기피**

⇒ ① 저가 수주공사 등 감리 강화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대가 기준을 상향 조정 검토**

② 감리전문회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PQ) 개선**

- 발주청이 원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경우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며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

- ③ 감리입찰시 설계 실적에 대한 **가점제도를 폐지**하되, 감리업무 중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부문은 설계자가 수행하거나 설계자의

협조를 받아 수행토록 제도화

- (2) 감리자의 교체 및 평가의 명확화
 - 감리업체가 기 투입된 감리자를 교체하여 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여 감리 부실화 초래

⇒ ① 감리자의 교체요건에 대한 심사 강화 및 고의 교체시 계약해제

- ② 감리사후평가제 도입 및 사후평가내용을 감리 입찰시 활용

-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한 사후 용역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감리자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며 사후평가항목에 **사용자의 품질평가분야 추가**

- (3) 부실시공 책임 주체의 명확화
 - 책임감리대상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가입기간을 공사중으로 한정**하고 있음
 - 하자발생이 부실감리에 기인하는 경우 **책임 추궁 곤란**

⇒ ① 부실시공발생시 시공자와 공동책임을 지는 등 감리자의 책임내용 및 범위 등을 계약문서에 **명문화**

- ② 발주자가 공사성격을 감안하여 감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기간을 공사완료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확대**

- 책임기간을 감리자는 **감리계약(착공~완공) 기간**으로 하고, 감리업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함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1997년) “하자보수기간(최대 10년)”까지를 보장기간으로 설정했으나 업체부담 및 예산 문제를 이유로 **부보기간을 축소**(1999년 개정)

- ③ 부실시공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품질 검사 및 확인에 대한 기록을 작업단위로 시공자, 감리자가 서명함으로써 향후에도 추적이

가능토록 정보시스템 구축

- ④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도입 방안 검토

〈재경부 T/F 검토 의견 : 감리제도〉

- 본문 외 내용 -

1. 감리수주단계

- ◇ 설계회사가 동일 감리입찰에 참가 금지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 ◇ 설계와 감리업의 겸업제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2. 감리이행단계

- ◇ 발주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감리자의 선정, 부실벌점 등의 권한을 **제3기관에 의뢰**
 - 건교부 검토안 : 현행유지

3.6 기타

- (1)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선
 - 건설업은 금액 120억(토목공사 150억)이상 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수급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주간 협의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

⇒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주간 협의체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

- (2) 건설공사 시험실 및 시험장비 설치기준 완화
 -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도 시험실 및 품질관리자의 의무배치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
 -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품질관리 기술자 확보가 곤란한 실정

⇒ 시험실의 **의무설치 폐지** 및 발주기관과 협의후 설치 유무 결정

- **품질관리자의 배치기준 완화**

변압기(절연유 포함) 배출시 협조요청 안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폴리염화비페닐(PCBs)이 포함된 폐변압기와 폐절연유의 폐기 처분과, 절연유 교체시에는 PCBs 성분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한 후, 농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 폐변압기 및 폐절연유 배출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를 요청해오에 따라 회원여러분에게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환경부 유해물질과 T. 02-2110-7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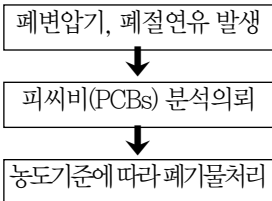
○ 관련규정(폐기물관리법 제11조 등)

- 변압기 수리 및 폐기 처분, 절연유 교체시에는 반드시 공인분석기관에 PCBs 성분분석을 의뢰한 뒤에 농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함
- ※ 폐기물 불법 처리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인분석기관

구 분	소재지	연락처
환경관리공단	인천 서구	032-560-2427
(주)랩프린티어	경기 수원	031-244-9162
전북대학교전북	전주	063-270-244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서울 고려대학교내	02-920-0791
에크서비스코리아	경기 시흥	031-499-252

○ 처리절차



※폐기물관리법:
피씨비를 2ppm 이상 함유한 경우 피씨비 함유 폐기물로 분류하며 고온 소각 및 용융처리만 가능

○ 조치사항

- 피씨비가 2ppm 이상 함유한 폐절연유의 사용은 불법이며, 2ppm 미만의 폐절연유도 절삭유 및 절연유로 다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변압기 등 유입식 전력장비 전국실태조사 관련 협조 안내

환경부는 전기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9월부터 금년 말까지 전국 10만 수용가를 대상으로 변압기 등 유입식 전력장비의 사용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실태조사와 관련, 전기안전관리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
T. 031-580-3071

○ 조사배경

- '04년 한전 등 발전업계 변압기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변압기에서 발암성 및 잔류성이 큰 유해물질인 피씨비(PCBs)가 절연유속에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
- ※ 전기설비기술기준고시 제38조(폴리염화 비페닐 사용 기계기구의 시설금지)
- 폴리염화 비페닐을 함유한 절연유를 사용한 기계기구는 전로에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사내용

- 유입식 변압기, 콘덴서(유입식, 고압이상)의 고용량 수용가(2만)는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 '06년부터 피씨비(PCBs)함량 분석을 실시할 예정

○ 조사방법

- 전국 10만 수용가 중 1000kW 이상의 고용량 수용가(2만)는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
- 1000kW 미만의 저용량 수용가(8만)은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

○ 협조 요청사항

- 설문지 수령 또는 전화 수신시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대행업체 관계자분들의 적극 협조

PCBs란 무엇인가?

열에 잘 견디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폴리염화비페닐류(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는 독성이 강하면서도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 피해를 일으키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들 중 하나이다.